하나금융그룹

10
2013년 No.07

은퇴설계를 위한

하나 행복가이드

2013년 세법개정안이 은퇴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미국 사적연금시장의 특징과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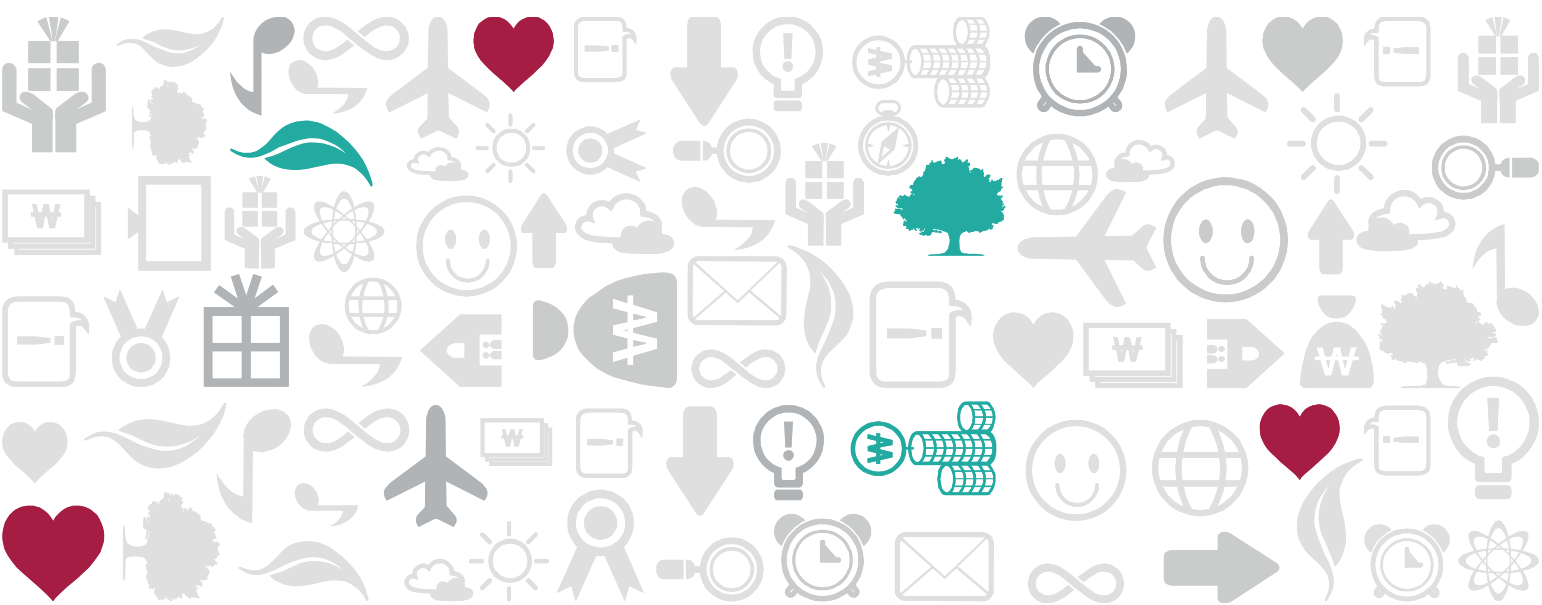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하나금융그룹 행복디자인 대표전화

하나은행	행복디자인센터	(02) 2002 – 1147
	퇴직연금부	(02) 3788 – 5454
외환은행	퇴직연금실	(02) 729 – 0806
하나대투증권	연금사업부	(02) 3771 – 7173
하나생명	행복금융프라자	(02) 3709 – 7252

Contents

이슈 포커스	2013년 세법개정안이 은퇴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미국 사적연금시장의 특징과 시사점	01
노후 재무설계	제조업체 부장 H씨, 개인연금 비중 확대 필요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공격투자형 전략이 요구 투자상품은 높은 수익성을 추구하는 주식형 상품중심 구성 10월 주식시장은 위험자산 선호 증가로 양호한 흐름 예상	09
국내외 단신	미국 은퇴저축계좌 잔액 상한선 규제에 따른 영향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계획 확정안 발표 인구정책을 포함한 공적연금 구조 개혁 선행 시 사적연금 활성화 가능	14
상품브리프	보유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자금 마련이 가능한 주택연금	19
행복한 노후디자인	성공적인 은퇴준비를 위한 3가지 생활 습관	21
하나 뉴스	하나은행, 어르신들을 위한 '추억더하기 까페' 개점 등	23
연금 통계		24

2013 세법개정안이 은퇴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수석연구원 정 승 희
(smiley77@hanafn.com)

"2013 세법개정안에서는 연금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세제 혜택은 타 금융상품 대비 장기간 유지해야 하는 연금상품의 가장 큰 가입 유인이다. 따라서 연금 세제의 개편은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과세 형평성을 추구하고 저소득층의 연금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 자칫 잘못하면 중산층의 연금 가입율을 하락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노후준비보다는 당장의 생계가 우선인 저소득층의 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개인연금 가입 보조금 지원 등 별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8월 기획재정부는 국정 과제 수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다. 조세정책의 개편 방향은 조세 부담 수준의 적정화, 조세 구조의 정상화, 조세 지원의 효율화라는 3가지 목표 하에서 추진되며 이 중 조세지원의 효율화는 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제도로의 전환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소득공제를 통해 지나친 세금감면 혜택을 누린 고소득자들에게 보다 많은 세금을 부여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지는 개편이다. 그러나 그 동안 소득공제를 받았던 자녀공제를 비롯해 연금, 기부금 등 대부분의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다양한 부작용 또한 염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소득공제 관련 세제 개편의 주요 내용과 이 가운데서도 특히 연금 관련 세제 개편이 은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

현재 국내에서는 근로소득세를 산정할 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방식을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소득공제란 소득에 대해 공제항목을 차감한 후 소득에 따른 세율을 곱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세제적격연금의 납입금 100만원에 대해 특별공제를 받는 근로자의 과세표준이 1000만원인 경우 6%의 세율에 의해 6만원을 환급 받는다.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한다면 38%의 세율로 38만원의 세금 절감 혜택을 받게 된다. 즉, 소득이 많은 근로자가 공제혜택도 많다. 반면 세액공제는 공제항목에 대해 일정한 공제율을 정하여 결정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세제적격연금의 납입금 100만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10%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10만원의 세금 절감 혜택을 받는 방식이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전체 소득금액에서 다양한 항목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구한 과세표준에 소득세

율을 적용하여 산출 세액을 구한 후 세액공제 금액을 제외하여 결정세액을 구하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산출하고 있다.

그러나 2013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근로소득공제, 인적 공제, 공적연금, 건강보험을 제외한 대부분 항목이 현행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특별공제 중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해서는 지출금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하고, 연금저축과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은 12%를 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연소득 6~7천만 원은 평균 2만 3천원, 7~8천만 원은 평균 33만원, 8~9천만 원은 평균 98만원, 9천만~1억원은 평균 113만원, 1억~1억1천만원은 평균 123만원의 세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물론 일각에서는 증가액이 아닌 증가율을 기준으로 보면 연소득 7~8천만 원 대에 속한 근로자가 부담하는 세율이 연소득 수 억원 대 근로자보다 더 커지는 등 소득과 세금 증가율이 일치하지 않아 법개정의 원래 취지인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 다는 등의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산층의 연금저축 가입에 부정적인 영향

고소득자에게 보다 높은 세금을 부과하려는 측면에서 금번 개편안의 큰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률적인 세액공제 적용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초고령 사회에 직면하여 연금가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이루어져도 부족한 시점에 오히려 그 동안 소득공제 혜택이 부과되던 연금저축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은 중산층의 연금 가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세제 개편으로 저소득층의 경우 연금저축 가입 시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오로지 과세 표준 1,200만원 이하에 속하는 근로자에만 해당된다. 이 경우 연금저축을 연간 400만원 납입 시 연간 24.6만원의 절세효과를 누렸다면 개정 세법 하에

2013 세법개정안에 따른 근로소득세제 개편 내용

공제항목		개정 전	개정 후
기본	기본공제	•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 현행 유지
	공적연금/건강보험 공제	• 본인부담금(국민, 공무원연금 등), 보험료(건강보험료) 전액	
	근로소득공제	• 총 급여의 5~80%	• 총 급여의 2~70%
부양가족 공제	다자녀 추가	• 자녀 1~2명 : 1인당 100만원 • 2명 초과 : 1인당 200만원	• 자녀 세액공제로 통합 자녀 1~2명 : 1인당 15만원 2명 초과 : 1인당 20만원 • 자녀 장려 세제와 중복적용 안됨
	자녀 양육비	• 6세 이하 자녀당 100만원	
	출산 및 입양	• 당해 연도 200만원	
추가 공제	장애인	• 인당 200만원	• 현행 유지, 2014년 이후 세액공제로 전환 부녀자 공제는 소득금액 1,5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적용(근로장려세제와 중복적용 안됨)
	경로우대자	• 70세 이상 100만원	
	부녀자	• 50만원	
	한부모	• 100만원	
특별 공제	의료비 공제	• 총 급여 3% 초과분 (700만원 한도)	• 세액공제율 15%로 전환 (공제한도 등 기타사항 현행 유지)
	교육비 공제	• 본인 전액공제, 대학생 900만원, 초중고생 300만원	
	기부금 공제	• 법정 기부금 전액, 지정기부금 소득금액 30%	
기타 공제	보장성 보험료	• 보험료 전액(100만원 한도)	• ***세액공제율 12%로 전환*** (공제한도 등 기타사항 현행 유지)
	연금저축/퇴직연금	• ***연금저축, 퇴직연금 추가불입액 전액 (400만원 한도)***	
	소기업,소상공인	• 공제불입액 전액(300만원 한도)	

자료 : 언론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서는 48만원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과세 표준 1,200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근로자는 모두 적게는 18만원에서 많게는 119.2만원의 세금 납부액이 증가하게 된다.

세제 혜택은 타 금융상품 대비 장기간 유지해야 하는 연금저축상품의 가장 큰 가입 유인이다. 그런데 이러한 가입 유인이 축소된다면 안 그래도 부족한 개인의 노후가 더욱 빈곤해질 가능성이 높다.

2012년 기준 국내 개인연금 가입률은 21.4%에 불과한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 대비 매우 저조한 편이다. 특히 연소득 1,200만원 이하 계층의 개인연금 가입률은 8.3%로 연소득 4,600~8,800만원에 속하는 소위 중산층 계층의 가입률(61.7%)대비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즉, 금번 세제 개편으로 유일하게 세제 혜택이 증가하는 연소득 1,2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세제 혜택이 증가하더라도 당장의 생계유지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개인연금에 가입할 여력 자체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높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는 중산층의 경우 세제 혜택이 감소하면 연금저축의 가입 유인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연금저축의 경우 기본적으로 매년 보험료를 내는 동안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세제 개편시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300만원에서 현행 400만원으로 확대한 결과, 신규 가입 및 월납입액이 급격히 증가했던 사실만 보더라도 반대의 경우 충분히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선진국,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세제혜택 부여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에 직면한 선진국의 경우 개인연금의 가입율과 유지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확실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기여, 운용, 급여의 3단계에서 모두 과세는 하고 있으나 실제 세제혜택의 범위가 넓어 근로자가 노후대비로 퇴직연금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여 시에는 인정기여금(연간 AU$5,000한도)의 15%에 대해 과세하며 운용 시에는 운용수익의 15%, 급여 시에는 55~60세 수령에 대해 15%를 과세하고 있다. 호주의 한계세율이 45%임을 감안할 때 15% 과세는 매우 매력적인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2012년 7월부터는 저소득층에

소득별 연금가입 환급액 변화

구분	소득공제방식		세액공제방식		환급액변화
과세표준	세율	환급액	세율	환급액	
~1,200만원	6.6%	26.2만원	12%	48만원	21.6만원
~4,600만원	16.5%	66.0만원			-18.0만원
~8,800만원	26.4%	105.6만원			-57.6만원
~3억원	38.5%	154.0만원			-106.0만원
3억원~	41.8%	167.2만원			-119.2만원

주 : 연금저축 연 400만원 납입 가정, 세율은 주민세 포함
자료 : 국세청

소득별 연금가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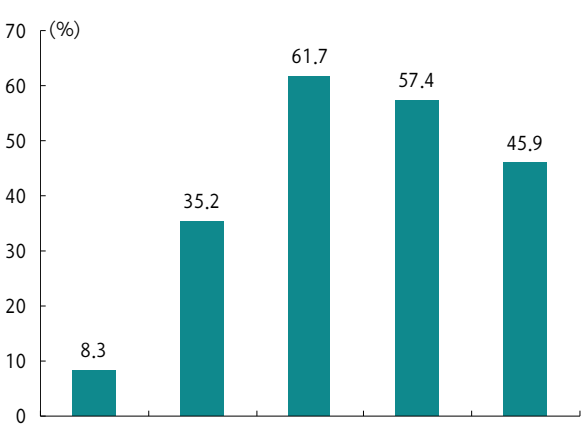

자료 : 국세청

대해 연금세제 지원을 강화하여 과세표준이 AU$37,000달러 이하인 경우 퇴직연금 불입액의 15%를 추가납입을 허용하였다.

미국은 개인연금(IRA)과 퇴직연금의 확대를 위해 세제 혜택 한도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기존에 연 4만 달러(또는 연봉의 100% 중 적은 금액)인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지난해 4만 9천 달러로 확대했다. 근로자들이 선택적으로 추가 납입할 수 있는 금액 역시 1만 1천 달러에서 1만 6천 5백 달러로 높였다. 만 50세 이상이라면 여기에다 6천 5백 달러를 더 납입할 수 있다.

또한 개인연금 가입률이 50%가 넘는 등 사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높은 캐나다의 경우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 투자수익 과세이연 등 정부의 다양한 세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개인연금불입액은 최대 2만 2천 달러까지 소득공제가 이루어진다. 또한 개인연금저축계좌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은 계좌인출 시까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며 개인연금저축계좌자산은 본인의 첫 주택구입시 대출 형식으로 세금을 안내고 최대 2만 달러 까지 인출이 가능하다.

연금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세제개편에 신중

평균 수명의 증가와 출산율 감소에 따른 고령화 현상은 전세계적인 이슈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해 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출산율은 1.29명으로 전 세계 평균인 2.52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고령인구 비중은 2050년에 40.2%로 급증하여 일본과 함께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제는 빠른 고령화의 진행에 대비한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아직까지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3층 노후 소득 보장체계의 틀은 갖추고 있으나 국민연금 실질 가입률은 낮을 뿐만 아니라 사적연금의 활성화가 미흡하여 실질적으로 노후소득 보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World Bank 등 국제기구에서는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최적의 연금 소득대체율로 70~80% 수준을 권고하고 있다. OECD 34개국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평균 63.6%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국내 연금 총 소득대체율은 약 42.1%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만 포함한 수치로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을 포함할 경우 45~50%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70~80% 수준은 물론 OECD 34개국 평균 대비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사적연금에 의한 소득대체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므로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적연금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전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사적연금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른 선진국의 사례에서 봤듯이 세제 혜택이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따라서 연금 세제의 개편은 그만큼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과세 형평성을 추구하고 저소득층의 연금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 자칫 잘못하면 중산층의 연금 가입율을 하락시켜 결과적으로는 향후 국가의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산층의 연금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세액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거나 혹은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소득공제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노후준비보다는 당장의 생계가 우선일 수 밖에 없는 저소득 계층의 개인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개인연금 가입 보조금 지원 등 단순히 세제 혜택을 부과하는 것 이상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사적연금시장의 특징과 시사점

수석연구원 송 재 만
(jmsong@hanafn.com)

"미국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다층연금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나 공적연금 비중은 점점 축소되고 사적연금은 확대되는 모습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재정부담 완화 노력 및 기업, 개인들이 사적연금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은 결과로 보인다. 최근 국내에서도 베이비붐 세대 은퇴 및 인구고령화로 인해 연금시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사적연금시장의 성장은 더딘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 사적연금시장의 특징을 통해 국내 사적연금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미국은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공적연금 비중을 줄이는 한편 사적연금의 역할 및 비중을 확대하는 등 연금시장 구조를 체계적으로 개편하였다. 특히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인 401k 활성화를 통해 사적연금시장을 성장시켰으며, 정부의 세제 혜택 등 적극적인 정책 지원도 개인연금으로의 가입을 유도하였다. 이처럼 선진국들은 재정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사적연금제도를 활성화하고 있지만 국내 사적연금시장은 규모 및 발전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특히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실물자산)에 치중되어 있는 국내 가계들은 경기 침체 지속으로 더 이상 부동산 등이 노후를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으며, 국민연금 비중도 미미해 사적연금에 의한 노후 소득 확충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전체 가구 중 68%가 1개 이상의 사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미국의 사적연금시장의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고 향후 국내 사적연금 시장의 발전 방안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 연금시장은 다층구조로 구성

미국의 연금시장은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층구조이다. 공적연금에는 연방정부의 사회보장청이 운영하고 있는 사회보장연금이 있으며, 1층에 해당된다. 미국의 사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를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가입하는 퇴직연금(DB, DC)과 개인차원에서 보다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 준비하는 개인연금(개인연금, 개인퇴직계좌(IRA))으로 구분되며, 각각 2층과 3층을 구성하고 있다.

미국의 사적연금시장을 살펴보면, 우선 개인연금은 크게 개인연금과 개인퇴직계좌(IRA)로 구분된다. 여기서 개인연금은 일반 생명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가입하는 일반연금 및 변액연금 상품을 포함하며,

개인퇴직계좌(IRA)는 1974년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ERISA)에 의해 도입된 것으로, 가입대상 및 세제혜택 등에 따라 다양한 상품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전통적(Traditional) IRA, Rollover IRA 및 Roth IRA 등이 있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로 나눠지며, 확정급여형(DB)은 정액방식과 캐쉬플로어(CB)로, 확정기여형(DC)은 401k, 403b, 457로 다시 구분된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제도 개편으로 사적연금시장의 질적·양적 성장을 이룸

미국의 공적연금은 고령화 및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등의 이유로 연금재정이 악화되어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사적연금부문은 공적연금의 개혁 및 세제혜택의 효과로 급성장을 기록하였다. 특히 미국은 악화된 공적연금시장을 대체할 사적연금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적격연금플랜(1942), Keogh Plan (1962), 401k(1973),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1974) 등을 제정하는 등 보편적 노후보장을 위한 제도가 체계적으로 정착되면서 사적연금시장의 질적·양적 성장을 가능케 했다.

미국의 사적연금시장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8년 소폭 감소하였으나 이후 연평균 8.3%로 성장하며 2012년 19.5조달러를 기록하는 등 1990년과 비교해 약 5배 수준의 성장을 나타내었다. 연금별로 살펴보면, 개인퇴직계좌(IRA)가 5.4조달러,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은 5.1조달러(401k: 3.6조달러), 확정급여형(DB)은 2.6조달러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퇴직계좌(IRA)의 경우, 경제회복조세법(ERTA) 제정 이후 70세 이하 전체 근로자 및 자영업자, 공무원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자산 성장세가 두드려졌다. 퇴직연금(특수직역연금 제외)의 경우에도, 1990년 1.8조달러에서 2012년 7.6조달러로 큰 폭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특히 401k로 대표되는 확정기여형(DC)의 자산 규모 확대가 두드러지면서 퇴직연금시장의 자산 증가에 기여하였다.

또한 GDP 대비 연금자산(퇴직연금) 비중이 국내의 경우 4.5%에 불과하나 미국은 70.5%를 차지하며 퇴직연금 중심의 사적연금시장으로 성숙된 것을 알 수 있다.

개인퇴직계좌(IRA)와 확정기여형(DC)의 높은 성장성

미국 연금시장 구조

구분		종류		규모
사적연금	3층	개인연금	개인연금 개인퇴직계좌(IRA)	1.7조달러 5.4조달러
	2층	퇴직연금	DC (401k, 403b, 457) DB(정액, CB) 특수직역연금	5.1조달러 2.6조달러 4.8조달러
공적연금	1층	사회보장연금 등		–

자료 : Investment Company Institute

미국 사적연금시장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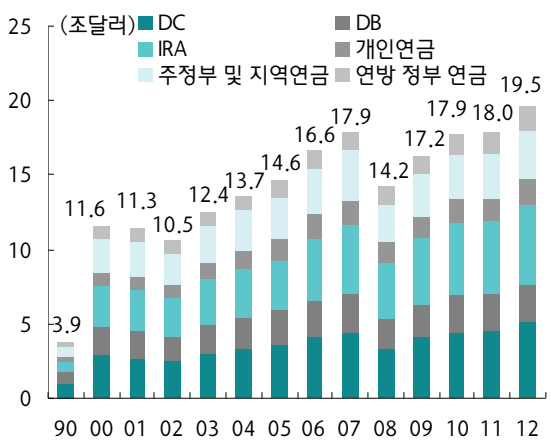

자료 : Investment Company Institute

미국 사적연금시장은 90년까지 확정기여형(DC) 및 확정급여형(DB) 등 퇴직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이후 확정급여형(DB) 시장이 감소되고 개인연금인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퇴직계좌(IRA)로 시장이 재편되었다. 특히 개인퇴직계좌(IRA) 비중은 2012년 기준 40% 이상을 차지하는 등 IRA 제도 도입(1974) 이후 꾸준한 자산 성장을 기록하며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은퇴자산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2006년 개인퇴직계좌(IRA)는 4.2조달러를 기록하며 4.1조달러의 확정기여형(DC)을 넘어서 미국 사적연금시장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012년 현재에도 개인퇴직계좌(IRA)는 특수직역연금이 포함된 미국 전체 사적연금시장에서 2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 퇴직연금의 경우, 기업의 연금재정 부담 및 경영 악화를 막고 이직 이후에도 계속 적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의 전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IT 발달에 따른 자산관리업 발전으로 확정기여형(DC)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주식투자 비중이 높은 연금 운용 방식

최근 Towers Watson(2013)에 따르면 2012년 미국 사적연금시장 자산 중 약 52%가 주식에 투자되고 있으며, 채권 투자 비중은 약 27%로 조사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퇴직금 운용방식이 대부분 원리금 보장상품인 채권형 상품에 편중된 모습과 많이 다른 양상이며, 이러한 미국 사적연금의 주식투자 비중이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수치인 60%에 비해 낮아진 수치인 것을 감안하면 미국 사적연금의 운용방식이 상당히 공격적인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미국 사적연금 중 상당 부분이 공격적 상품인 뮤추얼 펀드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확정기여형(DC) 중 401k와 개인퇴직계좌(IRA)에서 뮤추얼 펀드 비중이 60.1%, 45.8%로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국내 사적연금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회사, 정부, 개인 차원의 역할 중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미국의 사적연금시장은 확정기여형(DC)와 개인퇴직계좌(IRA) 부문의 성장을 발판으로 활성화되었다. 또한 자금 운영도 예·적금 비중이 적고 뮤추얼 펀드 등 공격적인 상품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원금보장형

주요 사적연금시장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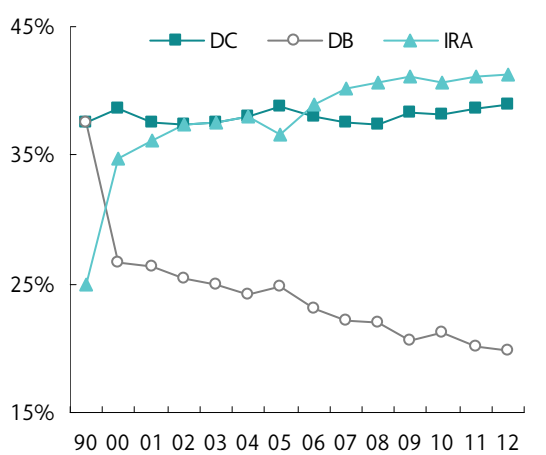

주 : 개인연금, 주정부 및 지역 연금, 연방 정부 연금은 제외
자료 : Investment Company Institute

미국 사적연금시장 구성비(2012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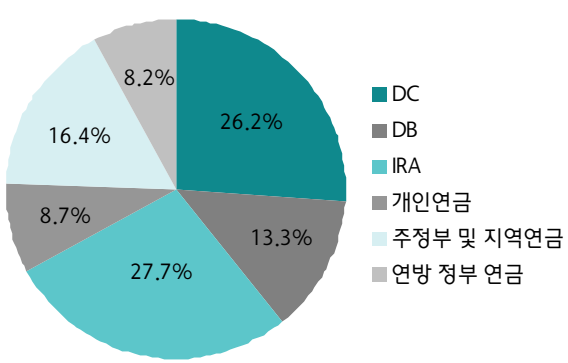

자료 : Investment Company Institute

예·적금 등에 국한된 투자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적연금시장의 성장도 더딘 편이다. 2012년 기준 국내 사적연금시장은 퇴직연금 69조원, 개인연금 216조원 등으로 약 285조원 규모이며, 전체 연금시장 중 약 4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최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약 20%로 OECD 등 국제기구 권고 비율인 4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긍정적인 것은 최근 국내에서도 세제혜택 및 공적연금에 대한 불안심리 등으로 사적연금시장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며, 앞서 살펴본 미국의 사적연금시장의 특징들이 국내 사적연금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사적연금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회사, 개인,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우선 금융회사는 과거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자산 비중이 확대된 미국 사례를 참고하여 향후 확정기여형(DC) 점유율 확대를 위한 상품개발 및 전략적 포지셔닝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과도한 고객 유치 경쟁 대신 자산관리부문의 역량을 강화하고 고객의 니즈에 맞는 상품개발에 노력하는 한편, 사적연금시장의 저변 확대를 위해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형 기업으로의 대상 범위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요국들의 사적연금 운용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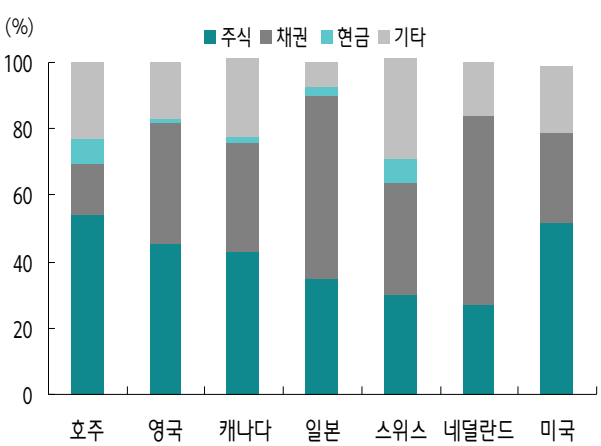

자료 : Towers Watson(2013)

더불어 그동안 국내 퇴직금 제도는 높은 이직률과 중간 정산제 등의 문제로 노후 자산 축적이란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이에 퇴직시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향후에 노후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개인퇴직연금(IRP) 부문의 전략적 판매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은행 및 예·적금 위주의 저수익·안정적 투자에서 벗어나 자산운용과의 연계를 통한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 노력도 필요하다.

금융소비자 개인측면에서는 공적연금 외에 사적연금을 통한 은퇴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은퇴자산 형성 및 관리를 위한 연금 관련 교육(연금제도, 투자 등)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이직에 따른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노후자산 축적이 어려운 우리나라는 사적연금의 중도 인출 등 해지율을 낮추고 은퇴 이후에도 인출하지 않도록 은퇴자산을 장기투자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정부차원에서도 미국처럼 세제혜택 확대 등을 통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정책적 인센티브를 일관되고 연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국내보다 세제 혜택이 높은 것을 참고해, 현재 개편중인 소득세법 개정안에 세제혜택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해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양한 세제혜택이 포함된 여러 종류의 미국 IRA를 참고해 계층별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고민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국내 사적연금 운영의 경우 예·적금 및 채권형 상품에 국한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상당히 보수적인 운영방식을 고수해 왔었다. 하지만 이제는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처럼 일정부분 이상을 뮤추얼 펀드나 주식형 상품으로 운영하며 향후 경기 회복시 수익 극대화를 누릴 수 있도록 주식투자 등 자산운용에 대한 투자한도 관련 규제 완화가 요구되는 바이며, 퇴직후 IRP 계좌 해지를 줄이기 위한 해지 사유 강화 등 제도 마련도 요구되는 바이다.

제조업체 부장 H씨, 개인연금 비중 확대 필요

제조업체 부장 H씨(50세)는 60세에 은퇴하고 85세까지 생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현재 생활비로 매월 200만원이 소요되는 것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결과 은퇴 후 노후생활을 위해 매월 약 256만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H씨는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액을 월 15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과거 퇴직금 중간정산 등으로 인해 퇴직금은 5,000만원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85세까지 매월 연금형태로 받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퇴직금은 매월 22.8만원으로 환산된다. 개인연금은 보험회사에 가입한 연금저축보험 형태로 월 15만원씩 60세까지 납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일정한 수익률(약 3%)을 감안한 연금저축보험의 일시금을 85세까지 매월 연금형태로 받을 경우 9.7만원 정도인 것으로 환산된다. 여기서 가정한 할인율은 4%에서 2%까지 매년 0.5%씩 차감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또한 H씨는 약 2억원의 아파트를 순실물자산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은퇴 직후 주택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60세에 종신 정액형으로 가입할 경우 1억원당 약 23만원의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과 주택연금, 월 환산한 퇴직금 및 개인연금저축을 필요 생활자금에서 차감할 경우 은퇴 후 월 부족자금은 27.5만원으로 계산된다. 이를 85세까지 필요한 금액을 은퇴 시점의 현재가치로 계산하면 약 6,030만원 정도이며 현 시점에서 보유 중인 순금융자산 2천만원으로 운용하여 월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약 11.67%의 요구수익률이 필요하다.

H씨의 경우 50대 평균인보다 순금융자산, 순실물자산 모두 적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더불어 노후준비 또한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필요한 생활자금이 많아 어려움은 있으나 개인연금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현재 보유한 투자자금으로 다소 공격적인 운용이 필요해 보인다.

50대 평균인과 H씨의 재무상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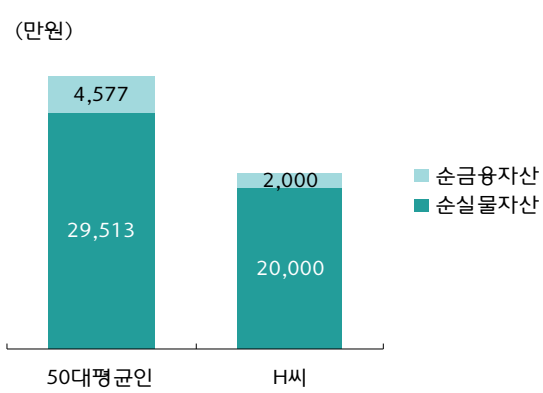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H씨의 노후준비를 위한 요구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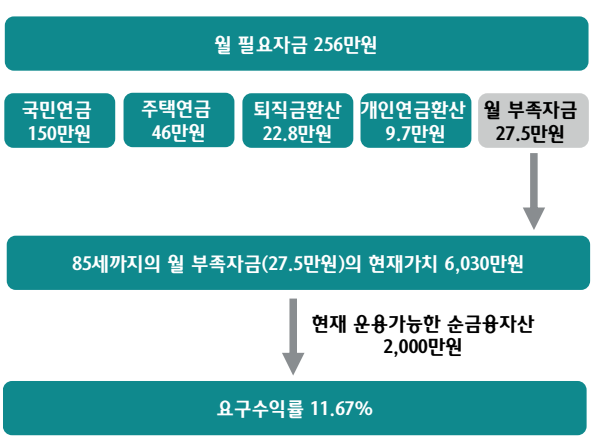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공격투자형 전략이 요구

기대수익률과 위험을 고려할 때 투자성향은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등으로 분류된다. H 부장이 별도로 개연연금을 확대하지 않는 한 월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수익률은 11.67%로 계산되었는데 이를 고려할 경우 K씨는 공격투자형 포트폴리오 전략이 필요하다

10월의 공격투자형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투자비중은 국내주식형 45%, 해외주식형 27.5%, 중위험형 및 ELS 등에 10%, 채권형 5% 등으로 하였다. 이는 전월과 동일한 전략이다. 양적 완화가 지속됨에 따라 글로벌 시장은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양적 완화 축소 우려로 하락하였던 이머징 국가의 주식시장도 양적 완화 축소 우려의 일부 선반영에 따른 되돌림 현상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펀드멘탈 개선이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반등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반면 선진국 증시는 경기 개선을 바탕으로 자금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양호한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자산별 투자비중은 전월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하였다. 다만 국내주식의 경우 선진국을 위주로 한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경기민감섹터에 대한 관심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불확실한 정책 요소에 따른 변동성 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위험형 전략과 국내외 증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동성 관리를 위한 ELS 등의 대안형 투자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한편 구조개편을 통한 질적 성장이라는 기존 중국 정부의 정책이 변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중국의 경제지표가 지속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단기적 관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양적 완화 유지로 소폭의 금리 인상 및 스프레드 축소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여 금리에 민감한 하이일드 채권에 대해서도 단기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투자성향별 기대수익률 및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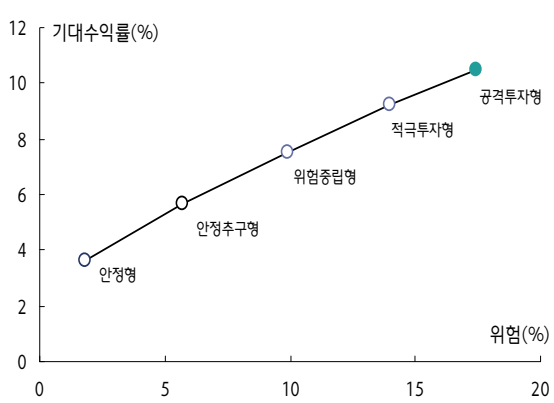

자료 : 하나대투증권 Wealth Guide

투자성향별 자산배분 비중

(단위 : %)

자산구분	안정형	안정 추구형	위험 중립형	적극 투자형	공격 투자형
국내주식	–	10.0	12.5	32.5	45.0
해외주식	–	–	15.0	27.0	27.5
원자재	–	–	–	–	–
중위험형	15.0	17.5	17.5	9.5	9.5
ELS/ELD	10.0	17.5	17.5	10.0	10.0
국내채권	40.0	22.5	12.5	5.0	2.5
해외채권	–	5.0	10.0	7.5	2.5
현금성	35.0	27.5	15.0	8.5	3.0

자료 : 하나대투증권 Wealth Guide

투자 상품은 높은 수익성을 추구하는 주식형 상품중심 구성

10월 공격투자형 포트폴리오는 전월과 동일하게 주식형에 대한 비중을 70% 이상 유지하기로 한다.

국내주식형의 경우 KOSPI200을 추종, 시장수익률 달성을 목표로 하고 무위험 차익거래로 +α 수익을 추구하며 지수수익 실현으로 업종 및 종목 차별화 장세에 대응하는 교보악사파워인덱스(주식-파생)A1, 기업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고 배당수익률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여 조정국면에서 하락방어적인 성향을 갖고 하반기 배당주 관심 확대가 예상되는 신영밸류고배당(주식)A, 성장형 포트폴리오 위주로 하되, 가치형 투자를 통하여 저평가 종목 발굴 및 주가상승을 추구하는 성장가치형 펀드인 하나UBS승승장구코리아(주식)A, 대형주 중심으로 업종 내 베스트 종목에 투자하며 기업 펀드멘탈 변화 분석을 통해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트러스톤칭기스칸(주식)A에 분산투자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리서치센터 추천 15개 종목에도 직접 또는 랩 형태로 투자하기로 하였다.

해외주식형의 경우 경기회복에 따라 기업들의 실적 기대가 높은 미국 대형 우량주에 집중투자하여 장기적 자본차익을 추구하는 피델리티미국증권자(주식-재간접)A, 성장 모멘텀이 기대되는 유로지역의 기업에 투자하는 슈로더유로증권자A(주식), 장기적인 저성장 시대를 마감하고 재정 및 통화정책 공조로 경기회복 기대감이 높은 일본시장의 인덱스를 추적 투자하는 KB스타재팬인덱스증권(주식-파생)A에 투자하였다.

대안투자로는 롱숏 전략을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리스크와 채권금리+α 의 수익을 추구하여 변동성 장세에서 양호한 성과를 기대하는 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50(주식혼합)A와 ELS 등에 대해 일부 투자하였다.

채권형으로는 기업신용분석 및 저평가 종목 발굴로 확정금리 대비 추가수익을 추구하는 흥국멀티플레이증권4호(채권)과 미달러표시 채권에 투자하여 짧은 듀레이션 전략으로 낮은 변동성을 추구하는 JP모건단기하이일드(채권)A에 낮은 비중으로 투자하였다.

투자 상품 포트폴리오

공격투자형 상품포트폴리오

자산	유형	상품명	운용사	비중	자산	유형	상품명	운용사	비중
국내주식	인덱스형	교보악사파워인덱스(주식-파생)A1	교보악사	8%	해외주식	일본	KB스타재팬인덱스증권(주식-파생)A	KB운용	7.5%
	배당형	신영밸류고배당(주식)A	신영운용	11%		중위험형	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50(주식혼합)A	트러스톤	9.5%
	일반주식형	하나UBS승승장구코리아(주식)A	하나UBS	8%		구조화	ELS(ELF/ELT)		10%
	일반주식형	트러스톤칭기스칸(주식)A	트러스톤	8%	국내채권	-	흥국멀티플레이증권4호(채권)	흥국운용	2.5%
	-	주식랩 또는 개별주식포트폴리오	-	10%	해외채권	-	JP모간단기하이일드(채권)A	JP모건	2.5%
해외주식	미국	피델리티미국증권자(주식-재간접)A	피델리티	10%	현금성	-	MMF/MMDA/MMT	-	3%
	유럽	슈로더유로증권자A(주식)	슈로더	10%	합계				100%
주택연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상품, 정액형, 종신지급방식, 60세 시점 2억원 가입 예정							
연금저축보험		연간 180만원 납입							

주 1)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공격투자형 상품 포트폴리오를 의미
2) 유형별 투자비중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가능하며 상기 자산배분의 정확성 및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참고자료로 활용바람

자료 : 하나대투증권

10월 주식시장은 위험자산 선호 증가로 양호한 흐름 예상

9월 FOMC 회의에서 미국 연준은 자산매입 축소 결정을 연기하였다. 이와 같은 신중한 정책 실행은 금융시장의 안정적 흐름으로 이어져 글로벌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 상승으로 국내 증시도 양호한 추이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경제의 양호한 펀더멘탈에 대해 외국인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

10월 주식시장은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인해 수혜가 예상되는 경기민감섹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재의 화학, 에너지의 정유 업종은 각 섹터의 이익전망 개선을 주도했고 신흥국 수출경기 회복 기대의 수혜도 기대되는 업종이다. 경기소비재의 소매 업종도 양호한 실적흐름 개선이 돋보인다. 분기 초반 대비 소폭 하락하긴했지만 금융섹터의 은행도 견조한 실적 흐름과 매력적 밸류에이션, 경기회복 기대 수혜로 긍정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채권시장은 Tapering 지연으로 금리 하락

양적 완화 유지로 달러화가 약세를 보임에 따라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 통화가치는 회복되었고 금리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선진국 금리도 하락하였으나 신흥국에 비하면 낙폭이 적었다. 국내 금리 하락 폭은 펀더멘탈 상 미국과 신흥국 중간 정도로 예상된다.

다만 양적 완화 축소(Tapering) 우려로 상승한 금리 상승분은 되돌려질 전망이나 FOMC 회의 전에 다소 선반영되었던 부분을 감안하면 하락 폭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이러한 Tapering 지연은 결국 경기를 더 배려하는 정책으로 금리 상승에 따른 경기 리스크도 감소시킬 것이다. 따라서 향후 국내 금리는 적정 수준의 탐색과정을 거친 후 경제지표 개선 지속 시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KOSPI 3분기 실적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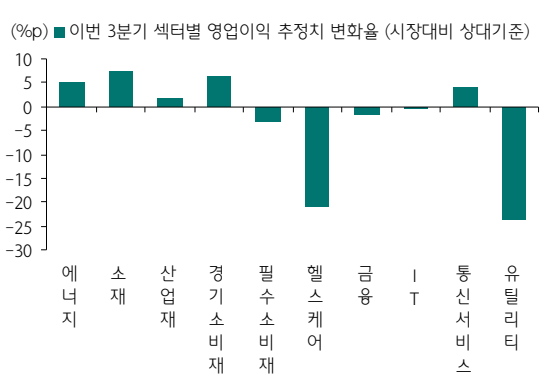

자료 : Wisefn, 하나대투증권

주요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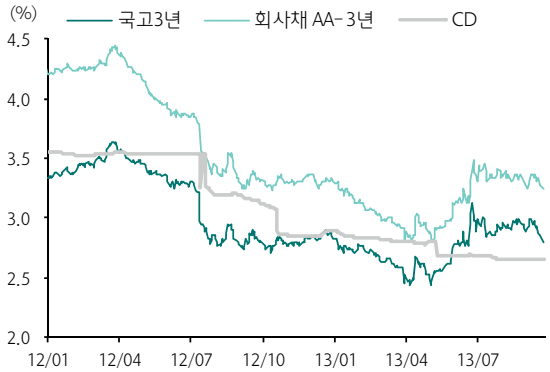

자료 : 금융투자협회, 하나대투증권

해외시장은 이머징 시장 부진에 따른 선진시장과의 차별화 지속

미국시장은 양적 완화 지속으로 장기 금리 상승을 당분간 억제시킬 것으로 보여 경기회복 개선세는 좀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여전히 양적 완화 축소가 연내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점은 시장 내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호한 경기개선을 토대로 주식시장의 상승세는 유지될 전망이다. 유럽은 9월 복합 PMI가 52.1로 2011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완만한 성장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 독일 메르켈 총리의 연임으로 정책 불확실성도 해소된 가운데 경기 개선 기대가 지속되며 향후 주가 상승 흐름을 지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2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가 전분기 대비 +0.9% 증가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시현하고 있다. 또한 수출증가세 지속과 소비선취수요 등으로 하반기 경제전망도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어 기업이익 개선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은 대내외 수요개선에 의해 경기회복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국 당국은 경기부양보다 구조조정, 개혁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는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둔화되며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는 모습이나 펀더멘탈상의 모멘텀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브라질은 다수의 경기부양책으로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본격적인 경기회복이라 판단하기에는 다소 이른 것으로 생각된다.

리츠시장은 양적 완화 축소 논란 재부각될 때마다 등락을 거듭할 전망

양적 완화 지속 결정으로 미국 10년채 국채가 소폭 하락하는 등 글로벌 금리상승세가 진정되며 리츠가격도 반등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주요국의 경제지표 개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회복이 가속화된다면 장기금리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양적 완화 축소시기 및 규모 결정 등 정책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금리변동성 확대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리츠자산에 대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일본기업 경상이익(YoY)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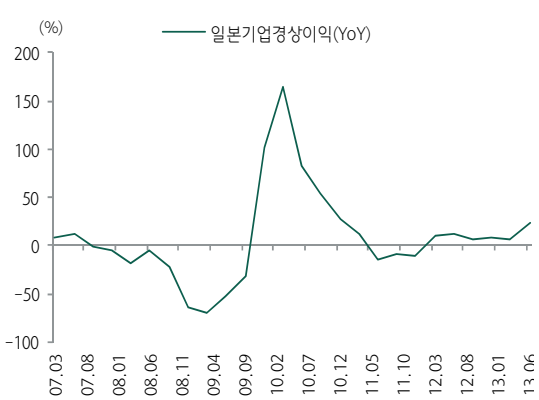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하나대투증권

글로벌 리츠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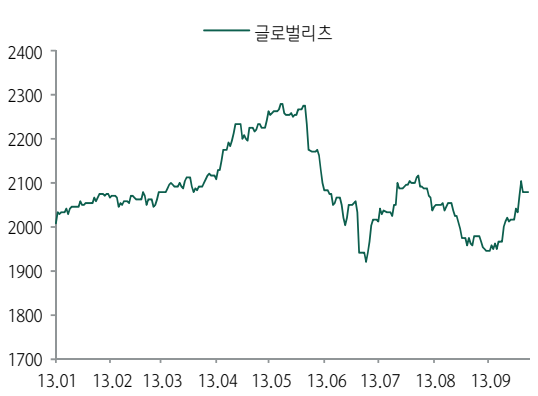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하나대투증권

미국 은퇴저축계좌 잔액 상한선 규제에 따른 영향

"할인율이 높을수록, 가입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DB형 수익 증가분이 높을수록 총 연금 잔액 상한이 낮아짐"

최근 발표된 EBRI의 보고서에서는 올해 초 오바마 정부가 발표했던 은퇴계좌의 잔액 상한 제한 규제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적용되는 할인율, 가입자의 나이, DB형 연금 가입 여부 등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최소 10%의 401(k) 가입자가 현재 납입한 은퇴계좌의 잔액을 줄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발표된 오바마 정부의 2014년 예산안에 따르면 현재 세제적격 DB 연금에 허용되는 최대 연간 연금 지급액인 $205,000(62세부터 지급) 보장을 위해 필요한 금액을 초과해 특정 은퇴계좌에 이미 자금을 납입한 연금 가입자는 앞으로 과세 이연 상품 추가 불입 및 투자수익 등 자산 증가분을 통한 계좌 증가가 금지된다. 다만, 연금 가입자의 실제 수익률이 이전에 가정했던 수익률보다 낮아 총 납입가능한 계좌 잔고가 높아질 경우 연금 납입은 재개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오바마 정부의 연금 정책은 세제혜택이 제공되는 은퇴 관련 연금들, 즉 IRA, 401(k)를 포함하는 Sec. 401(a), Sec. 403(b), Sec. 457(b), DB형 연금 수익 증가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DB형 수익 증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과거의 제안들과 다른 특이할 만한 점이다. 이와 같은 연금 납입액 및 증가분에 대한 규정은 2014년 예산안이 의회에서 승인될 경우 2014년 1월부터 적용이 예상된다.

미국 은퇴저축계좌 잔액 상한선 규제는 적용되는 할인율, 가입자의 나이, DB형 연금 가입 여부 등에 따라 가입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달라진다. 먼저 적용되는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총 연금 잔액 상한이 낮아진다. 2014년 예산안의 공식 발표 이전 EBRI는 65세까지 총 300만 달러 상한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입자 비율을 추정하였고, 그 결과 2011년 말 기준 60세 이상 IRA 및 401(k) 가입자 중 약 0.1%가 이미 300만 달러 이상의 연금 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예산안이 발표되고 나온 할인율 가정에 의한 현재 시점의 할인율 4%를 적용할 경우, 62세 이후 연간 $205,000의 현재가치는 대략 340만 달러 수준이다. 美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등에 따라 향후 할인율 증가가 예상되며, 이 경우 총 연금 잔액 상한은 현재의 340만 달러 수준에서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실효 이자율이 6%로 증가한다면 現 62세 가입자의 연금 잔액 상한은 대략 270만 달러로 감소할 것이고, 8%로 증가한다면 230만 달러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가입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연금 잔액 상한이 더 낮아진다. 예를 들어 4%의 실효 이자율로 계산시 現 62세 가입자의 340만 달러 연금 잔액 상한은 가입자의 나이가 25살일 경우 약 80만 달러까지 감소하며, 이자율 8% 가정 시에는 13.2만 달러로 감소한다. Sect. 415(c)(1)(A)에 따른 2013년 기준 DC형 납입 상한인 연 51,000달러를 매년 납입하고 투자수익률이 단지 1%에 불과하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실효 이자율이 8%라면 25세 연금 가입자는 3년 이내에 연금 잔액 상한인 13.2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정부의 은퇴계좌 납입액 상한 제한은 가입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그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DB형 연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DB형 수익 증가분이 높을수록 더 많은 연금 잔액을 감

소시켜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B형 연금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401(k) 가입자들에게 각각 4, 6, 8%의 이자율을 적용해 본 결과, 401(k) 가입자 중 상위 10~20% 정도가 상한선 규제 도입으로 401(k) 잔고를 줄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4% 이자율 가정 시 최소 10%에 해당하는 가입자가 65세에 축적된 401(k) 잔액 중 1.7% 가량을 줄여야 하고, 5%의 가입자는 5.5%를, 1%의 가입자는 10.5%를 줄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자율이 8%로 증가하면 20~30%의 더 많은 가입자가 연금계좌 잔고를 감소시켜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입자 중 10%는 6.6%의 잔고를 줄여야 하고, 5%의 가입자는 10.6%, 1%의 가입자는 25.6%를 줄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B형 연금을 보유하고 있고 이에 따른 수익 증가분을 고려할 경우 수치가 다소 달라진다. 예를 들어 401(k) 가입자가 연간 2%의 수익 증가분을 가지는 DB형 상품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8%의 할인율을 적용하면 상위 30%의 가입자가 연금 잔액을 줄여야 하며, 1% 수익 증가분 고려 시에는 상위 20%의 가입자가 연금 잔액을 줄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DB형 연금의 수익 증가분이 높아질수록 감소시켜야 하는 연금 잔액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현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즉, 미국 정부는 이와 같은 규제가 정부 예산 확보와 함께 은퇴 이후 합리적 수준의 소비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초과하는 은퇴저축의 규모를 제한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반대자들은 상한선 규제가 은퇴저축을 장려하는 일반적인 정부 정책과 부합하지 않으며, 은퇴저축이 연금 형태로 가입자에게 제공될 경우 결국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더 장기적 관점에서는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기존 연금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세법개정안이 추진되면서 연금시장 활성화와 배치되는 정책이라며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대비 연금시장 등의 발전 정도가 낮아 은퇴 이후의 삶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는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The Impact of a Retirement Savings Account Cap", EBRI, 2013.8)

DB형 가입 여부 및 수익 증가분에 따른 연금 잔액 감소분

구분	DB형 미가입 시				
	상위 1%	상위 5%	상위 10%	상위 20%	상위 30%
8% 실효이자율 적용 시	25.6%	10.6%	6.6%	0.6%	0.0%
6% 실효이자율 적용 시	14.1%	7.8%	4.3%	0.0%	0.0%
4% 실효이자율 적용 시	10.5%	5.5%	1.7%	0.0%	0.0%
구분	DB형 가입 시 (8% 실효이자율 가정 시)				
	상위 1%	상위 5%	상위 10%	상위 20%	상위 30%
DB형 2% 수익 증가분 적용 시	57.5%	41.4%	30.7%	15.5%	5.4%
DB형 1% 수익 증가분 적용 시	45.9%	23.5%	11.8%	3.2%	0.0%

자료 : EBRI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계획 확정안 발표

"소득 하위 70% 노인 대상,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연금액 차등화가 특징"

지난 9월 25일 정부가 "기초연금 도입계획" 확정안을 발표하였다. 정부안의 가장 큰 특징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소득 하위 70% 노인이며, 연금 지급액도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화되었다는 점이다.

現 기초노령연금 제도는 OECD 회원국 중 압도적 1위인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45%)에 대처하기 위해 2008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 수급 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5% 수준인 매월 최대 9만 6,800원을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現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낮은 급여 수준으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막대한 재정 및 국민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전반적 구조개혁에 대한 부담으로 노후소득 보장보다는 보완의 형태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축소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급여 적절성 차원에서 기초노령연금 인상이 불가피하기는 하나, 현재와 같은 준 보편적 제도를 유지할 경우 급여 인상 시 재정부담이 급격히 증가해 장기적 관점에서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월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확대한 뒤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국민행복연금 방안을 발표하였다. 국민행복연금 도입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이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4개 집단으로 구분돼 매달 4~20만원의 연금을 차등 지급받게 된다. 우선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소득 기준 하위 70% 노인(317만 명)들은 현재 받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의 두 배 정도 되는 20만원씩을 매달 지급받게 된다. 다음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소득 하위 70% 노인(101만 명)들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14~20만원의 연금을 차등 지급받는다. 또한 현재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소득 기준 상위 30% 노인 중 국민연금 가입자(79만 명)는 4~10만원, 미가입자(101만 명)는 4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이와 같은 내용의 국민행복연금 방안이 발표되자 각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우선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기초연금의 기본 취지를 살리면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역차별을 함께 고

기초연금 확정안 비교

구분	현 기초노령연금제도	인수위 案	기초연금(확정안)
대상자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	65세 이상 모든 노인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
지급액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 수급 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5% 수준 (매월 최대 9만 6,800원)	① 소득 기준 상위 30% ▶ 연금 가입 : 4~10만원 ▶ 연금 미가입 : 4만원 ② 소득 기준 하위 70% ▶ 연금 가입 : 14~20만원 ▶ 연금 미가입 : 20만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 지급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보건복지부

려한 기초연금 구조가 문제가 되었다. 즉, 소득 기준으로는 저소득층에 기초연금이 더 많이 지급되도록 제도가 마련되었지만,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기준으로 할 때는 상대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고 소득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집단이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도 문제가 되었다. 세금으로 충당되는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확대하면서 부족한 재원 일부를 국민연금 기금에서 충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방안이 형평성 및 재원 확보 문제로 시작 전부터 난관에 부딪히면서 한때 문제 해결을 위해 각계가 참여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구성되기도 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지난 9월 정부가 기초연금 확정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소득 하위 70%에 속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거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이면 20만원 전액을 받지만 12년이면 19.1만원, 13년이면 18.1만원 등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약 1만원씩 삭감돼 20년 이상 가입자의 월 수령액은 10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2028년 이후 국민연금에 가입한 미래 세대의 경우 가입기간이 16년이 되는 해부터 기초연금 월 수령액이 줄어들어 30년 이상 가입 시 10만원을 받게 되는 구조를 가진다.

정부는 이 안을 11월 국회에 제출해 12월 심의를 거친다는 계획이지만 발표안이 기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비해 지급대상 및 금액에 있어 크게 후퇴하면서 야권 및 시민단체의 반발로 입법화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연금액 차등화 방안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가 연금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동시킨 것은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하면 장기적으로 20만원을 모두 받는 인원이 점차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규정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청년층과 베이비붐 세대가 받는 기초연금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발표안이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에게 불리하다는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에 따라 늘어나는 이익이 삭감된 기초연금보다 더 높아 국민연금 장기 가입이 가입자들에게 더 유리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상황에서 가입자의 수명 및 제도 개혁 여부 등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액이 달라질 수 있어 가입자들을 설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민연금의 절반을 차지하는 지역가입자 및 임의가입자가 상대적 박탈감으로 국민연금 탈퇴를 하지 않도록 충분한 의견 조율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3.9)

기초연금 가입기간별 급여 예시 (소득 200만원 기준)

국민연금 가입기간	기초연금	국민연금	총액	국민연금 가입기간	기초연금	국민연금	총액
11년	20.0만원	29.6만원	49.6만원	16년	14.8만원	45.1만원	59.9만원
12년	19.1만원	32.6만원	51.7만원	17년	13.5만원	48.6만원	62.1만원
13년	18.1만원	35.6만원	53.7만원	18년	12.2만원	52.1만원	64.3만원
14년	17.1만원	38.6만원	55.7만원	19년	10.8만원	55.6만원	66.4만원
15년	16.1만원	41.6만원	57.7만원	20년	10.0만원	59.1만원	69.1만원

자료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을 포함한 공적연금 구조 개혁 선행 시 사적연금 활성화 가능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공·사연금 위상 정립 및 이를 통한 연금시장 활성화가 필요 ”

지난 8월 2013 보험관련 연합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고령사회에서의 공 · 사연금 역할” 에서는 인구정책 접근을 포함한 공적연금 구조 개혁이 선행되어야 사적연금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한국은 지금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동으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가 출생한 시기의 합계 출산율은 1960년 6.33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1975년 이후 급감하여 1983년 인구대체 수준에서 2005년 1.08명까지 감소, 2010년 1.23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반면 기대수명은 1970년 남성 58.7세, 여성 65.6세에서 2009년 남성 77세, 여성 83.8세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처럼 총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노인인구는 증가하면서 노인 부양비가 증가하고 있고, 이는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초고령화 사회의 핵심 과제로 한국의 경제 · 사회적 특징을 주도하고 있는 1,650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를 들 수 있다. 동 세대는 1988년 국민연금에 30년 가입한 세대로 국민연금 최대 수혜자이면서 재정악화의 주된 요인이기도 하다. 즉,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국민연금 급여 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베이비붐 세대가 모두 사망하는 2060년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외에도 OECD 국가 중 1위인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과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소득대체율, 공 · 사 소득보장 체계 미정립도 우리나라의 당면 과제이다.

이와 같은 핵심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적연금의 위상 정립이 필요하다. 경제 · 정치적 여건, 인구노동 여건, 연금 시스템 등을 고려해 지속 가능성, 소득 보장성, 형평성 등을 감안한 국민연금 위상 정립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정책과제로 기초노령연금 개선, 국민연금 장기적 재정 불안 및 특수직역연금 재정 불안 해소가 요구된다.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장기적 지속가능성이 담보된 노후소득 사각지대 해소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재원 조달이 최대 관건이다.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와 관련해서는 2007년 법령 개정으로 2028년까지 급여율을 40%까지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급여수준 조정이 이미 이루어졌고, 수급 연령도 1998년 법령 개정으로 2013년 61세로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될 것이다. 연금보험료의 경우 상향 조정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당분간은 어려움이 있으며 따라서 국민연금 문제의 근본 해법은 출산율 2.1 수준의 인구구조의 개선이다. 또한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개혁이 필요하다.

공적연금 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 보니 사적연금은 더 열악한 실정이다. 공적연금 위상이 미정립된 상태로 퇴직연금의 성격이 모호해지면서 개인연금의 발전이 더뎌지는 등 사적연금 기능까지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개인퇴직연금계정 활성화, 퇴직연금간 상품 연계 강화 등 직장 이동에도 연금수급이 가능한 상품환경 조성, 사적연금은 중간계층과 상층계층 중심으로 타겟팅하고 개인연금은 자영업자에 필요한 상품을 개발하는 등 공적연금과 보완적인 상품 구성 및 타겟팅이 필요하다. 또한 장기적으로 금리리스크와 장수리스크를 통제함으로써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고 수수료 등 적정 사업비 경쟁구도 조성을 통한 사업효율성 증진이 필요하다.

(“고령사회에서의 공 · 사 연금 역할”, 2013 보험관련 연합 학술대회, 2013.8)

주택연금
보유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자금 마련

주택을 연금으로 만들어주는 금융상품

주택연금은 고령자들이 소유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대표적인 은퇴 금융상품이다. 선진국에서는 역모기지라는 이름으로 오래 전부터 판매 중인 상품으로 국내에는 지난 95년 일부 민간 은행에서 도입하였으나 장수리스크,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리스크로 인해 적극적인 판매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후 07년 주택금융공사가 확정기간 연금지급을 보장하는 역모기지론과는 달리 종신토록 연금지급을 보장해주는 주택연금을 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장이 형성되었다.

주택연금의 이용 자격은 만 60세 이상 1세대 1주택 소유자로 한정된다. 기존에는 배우자도 60세를 넘어야 했으나 지난 8월부터는 주택 소유자만 60세 이상으로 가입 기준이 완화되었다. 대상주택은 시세 기준으로 9억원 이하 주택이다.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는 평생 연금액이 동일한 정액형, 1년마다 3%씩 증가하는 증가형, 1년마다 3%씩 감소하는 감소형, 초기 10년간 일정액을 지급한 후 11년째부터 70%로 감소한 후 이후 기간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전후후박형 등 다양한 방식 가운데 선택이 가능하다. 한편 가입자는 언제든지 연금지급총액의 전부 혹은 일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부부 모두 사망 시에는 주택 처분 금액으로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처분금액이 연금지급총액보다 크다면 잔여분은 상속인에게 돌려주지만, 반대의 경우라도 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주택연금 도입을 추진 중이다. 지난 6월 하우스 푸어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사전가입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가 만 50세 이상 6억원 이하 1주택자가 일시 인출금을 연금지급한도의 100%까지 사용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한 후 그 주택에서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 밖에도 연금 수령기간을 정하는 확정 기간형 주택연금 등의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 .

주택 외 별도의 금융자산이 없는 경우 유리

주택연금과 마찬가지로 평생 동안 연금지급을 보장해

주택연금과 즉시연금 특징 비교

	주택연금	즉시연금
가입 대상	만 60세 이상	만 45세 이상
지급 방식	종신	종신
취급 금융기관	은행	보험사
장점	거주 안정성을 보장받으면서 연금액 수령 정부보증으로 연금지급중단 위험이 없음	비과세 혜택 존재(2억원 이하 혹은 종신형) 45세부터 수령 가능
단점	초기 가입비용(보증비, 설정비) 소요 주택가격이 하락해도 동일한 연금지급	상당한 금융자산의 확보가 필요

주는 상품으로는 즉시연금 상품이 있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연금으로 만들어주는 상품이고 주택연금은 집을 연금으로 만들어주는 상품이다. 두 상품 모두 사망 시점까지 일정액의 연금 지급을 보장해주며, 사망 시점에 남은 돈이 있다면 상속이 가능한 금융상품이다. 단, 주택연금은 주택 외 별도의 금융자산이 없는 경우 활용이 가능한 상품으로 정부가 지급을 보장해준다는 측면에서도 안정성이 높다. 반면 즉시연금은 4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한다.

성공적인 은퇴준비를 위한 3가지 생활 습관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라

사실 당장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급급한 상황에서 "20년 또는 30년 후를 준비하라"는 말은 비현실적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준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라고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노후준비를 늦추면 늦출수록 그만큼 노후자금의 준비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시중금리 연 3.0%로 60세에 10억 만들기를 목표로 한다면 30세에 1,716,040원을, 40세에는 3,045,976원을, 50세에는7,156,074원을 저축해야 한다. 이러한 차이는 시간이 만들어 주는 '복리의 효과' 때문이다. 노후 준비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할수록 더 큰 복리의 효과를 가져와 은퇴 후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은퇴설계에 있어서 시작의 시기 못지않게 저축의 금액도 중요하다. 은퇴자금으로 10억을 받고 싶은지, 5억을 받고 싶은지 물어본다면 당연히 10억이라고 말할 것이다. 40세에 각 3백만원과 2백만원으로 은퇴준비를 한다면 60세에는 상당한 차이가 날 것이다. 즉, 은퇴한 나를 위해서 현재 얼마를 저축하느냐에 따라 여유로운 노후와 궁핍한 노후가 결정되는 것이다.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현역 시절에 자금을 잘 관리하여 수입이 지출보다 더 적은 시기에 사용하는 돈의 효용성을 높이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하다.

노후자금에 손대지 마라

은퇴 준비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후를 위한 저축과 투자를 절대 멈추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다. 특히 위험자산 투자 시 이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예를 들어 적립식펀드 투자를 10년간 계획하고 있는 과정에서 주식 폭락장을 맞게 되어 투자수익률이 하락하고 심지어는 원금손실을 보게 된다면 투자를 계속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은퇴까지 10년, 20년 남았는데 주식시장이 폭락했다고 보유펀드를 환매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도리어 경기침체기나 주식 하락기에도 차곡차곡 투자하여 매입좌수를 모으는 것이 지혜로운 투자이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도 마찬가지이다. 2005년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기 전 기존의 퇴직금제도가 제대로 노후보장 기능을 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중간정산제도 때문이었다. 갑자기 돈이 필요할 경우 노후자금을 손쉽게 꺼내 써버릴 수 있다. 이는 노후준비 자체가 흔들릴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노후대비 자금을 은퇴시점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은퇴용 계좌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후생활을 위해 준비한 자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반드시 다른 자금과 구분해서 관리해야 한다.

노후를 준비한 재교육에 투자하라

사실 가장 확실한 노후 준비는 재테크가 아니라 평생현역에 남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은퇴없이 계속 일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의미 이상의 보람찬 노후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 앞으로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에서는 개인이 은퇴를 하더라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평생 현역으로 활기찬 인생을 보낼 수 있는가를 좌우할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정년후에 의료 · 복지 · 교육 분야의 NPO(Non Profit Organization,비영리조직)단체에서 자원봉사 활

여기서 잠깐! 정리하고 갑시다!

3장. 은퇴자금 준비하기

성공적인 은퇴준비를 위한 3가지 습관

1.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라.

2.노후자금에 손대지 마라.

3.노후를 준비한 재교육에 투자하라

투자의 기본은 장기분산 전략이다. 투자에서 원금 자체가 불어나는 복리는 대단한 위력을 가진다. 장기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장기투자를 하게 되면 손실위험이 그만큼 줄어들고 복리 효과가 커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복리의 마술을 실현하려면 5~10년 장기투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3가지의 투자법칙 : '72'법칙은 원금이 두배로 불어 나는데에 걸리는 기간을 계산하는 공식이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돈을 연 6%의 금리로 12년을 투자하면 원금 1,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불릴 수 있다는 것이다. 위험자산에 대한 적정한 투자비중을 직관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바로 '100-나이'법칙이다. 이는 100에서 자신의 나이를 빼서 나온 비율만큼 수익률이 높은 투자자산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안전자산에 배분하라는 것이다. '-50=+100'법칙은 투자자산의 위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준다. 50%의 투자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100%가 상승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투자 손실이 50% 발생한 뒤 원금 회복을 하려면 50%가 아니라 100%가 올라야 된다는 법칙으로 손실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겨내야 하는 투자심리 :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심리를 잘 통제하여 비이성적인 투자자의 투자 형태를 무리 지어 따라가는 집단심리를 경계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투자 능력을 과신하지 말고 투자의 기본원칙인 장기·분산투자를 고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조건적인 위험 회피는 좋은 투자 기회를 놓쳐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떨어뜨린다. 은퇴자금은 장기 계획에 의해 준비되는 만큼 적정한 비중의 위험자산 투자는 필수 불가결이다.

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현역시대에 쌓은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것이다. 자원봉사 활동이지만 무료봉사는 아니다. 취업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보람있게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용돈 정도의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은퇴 이후 벌이를 위해 재취업을 하든 NPO 활동을 하든지,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젊은 시절부터 준비가 필요하다. 55세 퇴직 연령을 최소한 70세 이상까지 연장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을 통한 직업 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적어도 40대부터는 자신의 직업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반 인생을 위해 본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장기 직업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투자 시간을 늘려야 한다. 인생 100세 시대에서 시간을 확보하여 자신의 직업 능력 개발에 투자하는가의 여부가 평생 현역의 길이를 결정할 것이다.

(하나은행 행복디자인 센터 행복디자인)

하나은행,
어르신들을 위한 '추억더하기 까페' 개점

하나은행은 서울시, 실버문화복지협회와 함께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 어르신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인 '추억더하기 까페'를 개점했다. 동 까페는 추억의 도시락과 커피 한잔을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고 추억의 팝송을 사연과 함께 DJ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어르신을 직원으로 고용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하나대투증권,
2013년 우공이산 펀드가입 이벤트

하나대투증권은 12월 31일까지 '하나대투 우공이산 추천펀드 이벤트'를 실시한다. 우공이산 추천펀드는 Long-Short 전략을 통한 중위험·중수익을 추구하며, 적립식 및 목돈투자 시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본 이벤트를 통해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3만원 상당의 상품권도 제공한다.

외환은행, Asiamoney社로부터
'2013 한국 최우수 외국한은행' 으로 선정

외환은행은 지난 26일 글로벌 경제전문지 Asiamoney社가 개최한 분야별 최우수 금융기관 시상식에서 Cash Management , FX 상품 및 서비스 등 총 8개 부문에서 한국 최우수 은행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수상으로 외환은행이 명실상부하게 한국을 대표하는 외국환 전문은행임을 국제금융시장에서 인정받게 되었다.

하나SK카드,
'Smart Any(스마트 애니) 카드' 출시

하나SK카드는 모든 가맹점에서 전월실적, 할인한도, 이용횟수 등 제한 없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하나SK Smart Any(스마트 애니) 카드'를 출시했다. 동 카드는 심플한 구성과 높은 할인율이 특징이며, 모든 가맹점에서 결제금액의 0.8%가 무조건 할인되고, 온라인 결제 금액에는 1.3% 우대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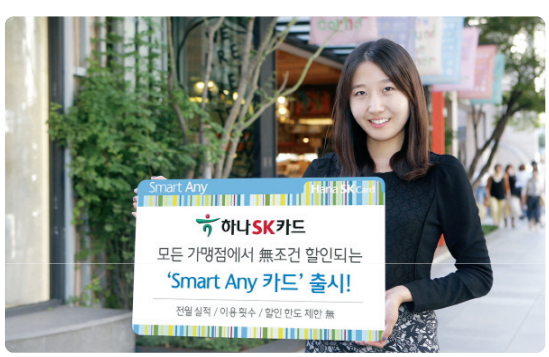

경제 활동

통계청

1. 경제활동 및 고용

연도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전체	15~19세	~29세	~39세	~49세	~59세	60세 이상	전체	15~19세	~29세	~39세	~49세	~59세	60세 이상
2008	61.5	6.5	63.6	75.2	80.1	72.0	37.7	59.5	5.9	59.1	72.9	78.4	70.6	37.2
2009	60.8	6.2	63.1	74.0	79.6	72.1	37.3	58.6	5.4	58.2	71.3	77.7	70.3	36.7
2010	61.0	6.9	63.2	74.6	79.8	72.7	37.0	58.7	6.1	58.2	72.0	77.8	70.9	36.0
2011	61.1	7.6	63.2	74.7	80.1	73.1	37.4	59.1	6.8	58.5	72.2	78.4	71.6	36.5
2012	61.3	7.7	62.8	75.0	80.0	73.8	38.4	59.4	7.0	58.1	72.7	78.3	72.2	37.5
2013.1~8	61.3	7.8	61.2	75.2	79.8	74.2	38.8	59.3	7.0	56.7	72.8	78.1	72.7	37.9
2013.7	62.4	9.4	62.6	75.5	80.5	75.3	41.1	60.4	8.0	57.8	73.2	78.8	73.8	40.6
2013.8	61.8	8.1	61.2	75.7	80.1	74.7	40.5	60.0	7.5	56.6	73.3	78.5	73.3	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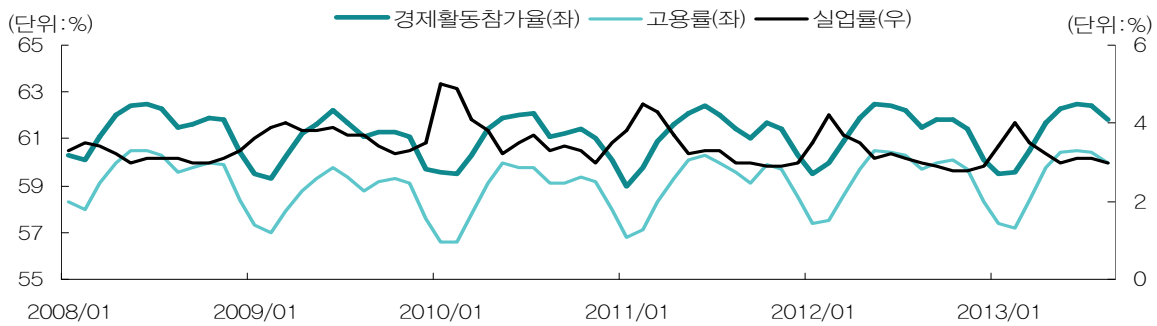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1. 가입자 현황

(개소, 명)

연도	총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계	농어촌	도시		
2008	18,335,409	921,597	9,493,444	8,781,483	1,940,510	6,840,973	27,614	32,868
2009	18,623,845	979,861	9,866,681	8,689,861	1,925,023	6,754,838	36,368	40,935
2010	19,228,875	1,031,358	10,414,780	8,674,492	1,951,867	6,722,625	90,222	49,381
2011	19,885,911	1,103,570	10,976,501	8,675,430	1,986,631	6,688,799	171,134	62,846
2012	20,329,060	1,196,427	11,464,198	8,568,396	1,956,215	6,612,181	207,890	88,576
2013.6	20,457,340	1,258,153	11,743,442	8,422,611	1,937,783	6,484,828	189,319	101,968
2013.7	20,540,139	1,269,385	11,769,413	8,478,011	1,950,327	6,527,684	188,544	104,171

2. 2013년 7월 연령별 노령 연금 급여수급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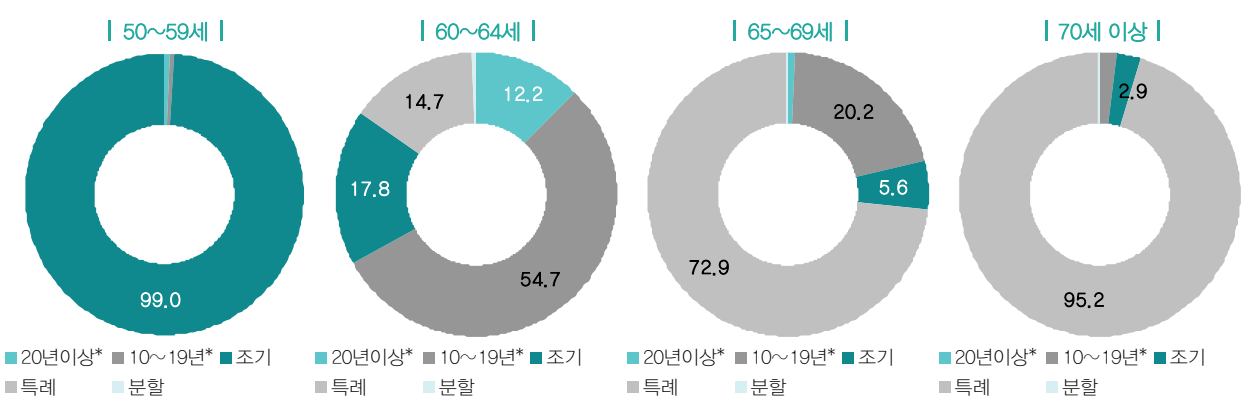

주 : *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의미

주택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월보

1. 신규 가입 및 보증공급 현황

(건, 억원)

연도	신규가입	보증공급액
2009.12	1,124	17,474
2010.12	2,016	30,361
2011.12	2,936	41,000
2012.12	5,013	69,006
2013.1~6	2,567	31,216
2013.7	478	5,638
2013.8	482	5,924

2. 2013년 8월 금융기관별 주택연금 현황

(억원)

은행	보증공급액	잔액
국민은행	2,190	83,836
신한은행	1,221	36,519
우리은행	656	27,741
하나은행	512	19,278
농협	753	19,659
기타	592	16,377
합계	5,924	203,410

주택연금 신규가입자 추이

보증공급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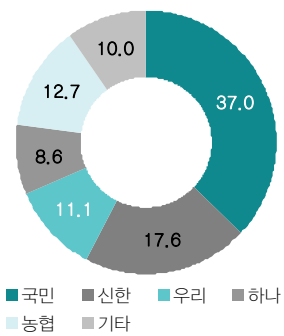

잔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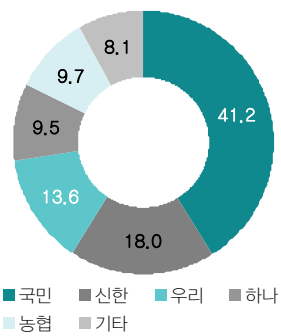

퇴직연금

노동부, 금융감독원

1. 2013년 6월 기준 가입 근로자수 및 사업자 현황, 계약수(말기준)

(명, 건)

구분	근로자				사업자			
	합계	DB형	DC형	기업형IRP	총계약수	DB형	DC형	기업형IRP
은행	7,497,189	5,119,103	1,284,475	85,596	1,248,628	82,561	99,279	46,162
생명보험	3,011,926	2,725,473	175,450	3,596	213,999	71,772	16,336	1,803
손해보험	999,942	941,499	54,636	267	23,090	1,930	17,216	230
증권	2,588,301	2,342,889	134,151	336	120,409	2,937	6,362	195
근로공단	83,493	0	81,453	477	23,082	–	22,855	227

2. 제도유형별 도입사업장 현황

(개소, %)

구분	합계	DB형 단독 도입		DB, DC 동시도입		DC형 단독도입		기업형IRP 도입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010	94,455	34,414	36.4	1,590	1.7	34,904	37.0	23,547	24.9
2011	139,151	53,351	38.3	2,876	2.1	56,476	40.6	26,448	19.0
2012.10	189,644	64,139	33.8	4,142	2.2	92,215	48.6	29,148	15.4
2012.11	194,209	65,531	33.7	4,129	2.1	95,317	49.1	29,232	15.1
2012.12	203,488	68,031	33.4	4,615	2.3	101,086	49.7	29,756	14.6
2013.3	215,962	70,868	32.8	4,924	2.3	109,820	50.8	30,350	14.1
2013.6	226,994	73,301	32.3	5,300	2.3	117,808	51.9	30,585	13.5

3. 2013년 6월 업권별 적립금 현황 및 추이

구분	합계	DB형	DC형	기업형IRP	개인형IRP
합계	785,962	502,123	139,024	88,081	56,734
은행	362,986	225,562	91,463	6,428	39,533
생명보험	166,176	139,769	18,936	170	7,301
손해보험	51,904	45,630	4,373	15	1,886
증권	121,813	91,162	22,630	15	8,006
근로공단	83,083	0	1,622	81,453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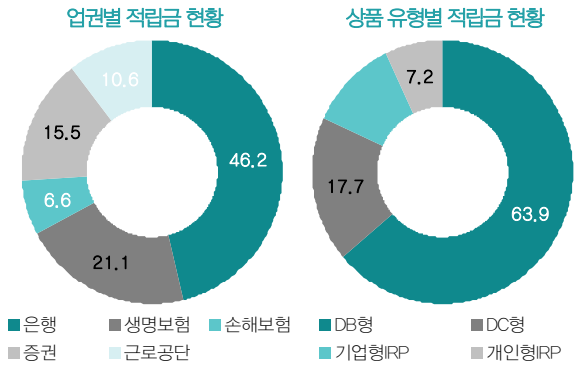

4. 2013년 6월 적립금 운용현황 및 비중

(억원, %)

구분			DB형		DB형		기업형 IRP		개인형 IRP		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원리금보장	예적금		253,895	50.6	84,112	60.5	5,806	87.4	35,432	62.4	379,236	53.8
	금리확정형보험		75,816	35.0	14,009	10.1	121	1.8	7,205	12.7	97,151	28.0
	금리연동형보험		18,789	3.7	4,756	3.4	54	0.8	1,254	2.2	24,853	3.5
	국채		491	0.1	1,110	0.8	0	0.0	1,500	2.6	3,101	0.4
	통안증권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정부보증채		0	0.0	0	0.0	0	0.0	0	0.0	0	0.0
	원리금보장ELS		36,276	7.2	1,871	1.3	0	0.0	2,205	4.0	40,443	5.7
	RP		7,927	1.6	1,671	1.2	1	0.0	854	1.5	10,453	1.5
	발행 및 표지어음		0	0.0	146	0.1	0	0.0	36	0.1	181	0.0
	기타		0	0.0	1	0.0	0	0.0	3	0.0	5	0.0
원리보장금 소계			493,185	98.2	107,677	77.5	5,982	90.1	48,579	85.6	655,422	93.0
실적배당	실적배당형 보험		162	0.0	1,508	1.1	9	0.1	348	0.6	2,027	0.3
	집합투자증권	주식형	784	0.2	17	0.0	0	0.0	23	0.0	824	0.1
		혼합형	721	0.1	8,403	6.0	39	0.6	1,035	1.8	10,198	1.4
		채권형	3,374	0.7	19,086	13.7	568	8.6	3,006	5.3	26,034	3.7
		재간접	3	0.0	182	0.1	0	0.0	28	0.1	214	0.0
		부동산/실물/특별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	987	0.2	0	0.0	0	0.0	0	0.0	987	0.1
		집합투자증권 소계	6,032	1.2	29,196	21.0	616	9.3	4,440	7.8	40,283	5.7
	직접투자		311	0.1	106	0.1	0	0.0	299	0.5	717	0.1
실적배당 소계			6,343	1.3	29,302	21.1	616	9.3	4,739	8.4	41,000	5.8
대기성 자금			2,596	0.5	2,045	1.5	44	0.7	3,418	6.0	8,103	1.2
총계			502,124	100.0	139,023	100.0	6,642	100.0	56,737	100.0	704,526	100.0

5. 2013년 6월 금융업권별 적립금액 현황

(억원, %)

구분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근로복지공단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원리금보장형	341,320	94.0	158,498	95.4	50,605	97.5	103,386	84.9	1,614	98.2
실적배당형	16,491	4.5	7,042	4.2	1,288	2.5	16,170	13.3	9	0.5
기타	5,178	1.4	634	0.4	5	0.0	2,265	1.9	21	1.3
합계	362,989	100.0	166,175	100.0	51,898	100.0	121,821	100.0	1,643	100.0

주 : 기타는 운용을 위한 대기성 자금(고유계정대, 발행어음 및 기타 현금성 자산 등)

www.hanaif.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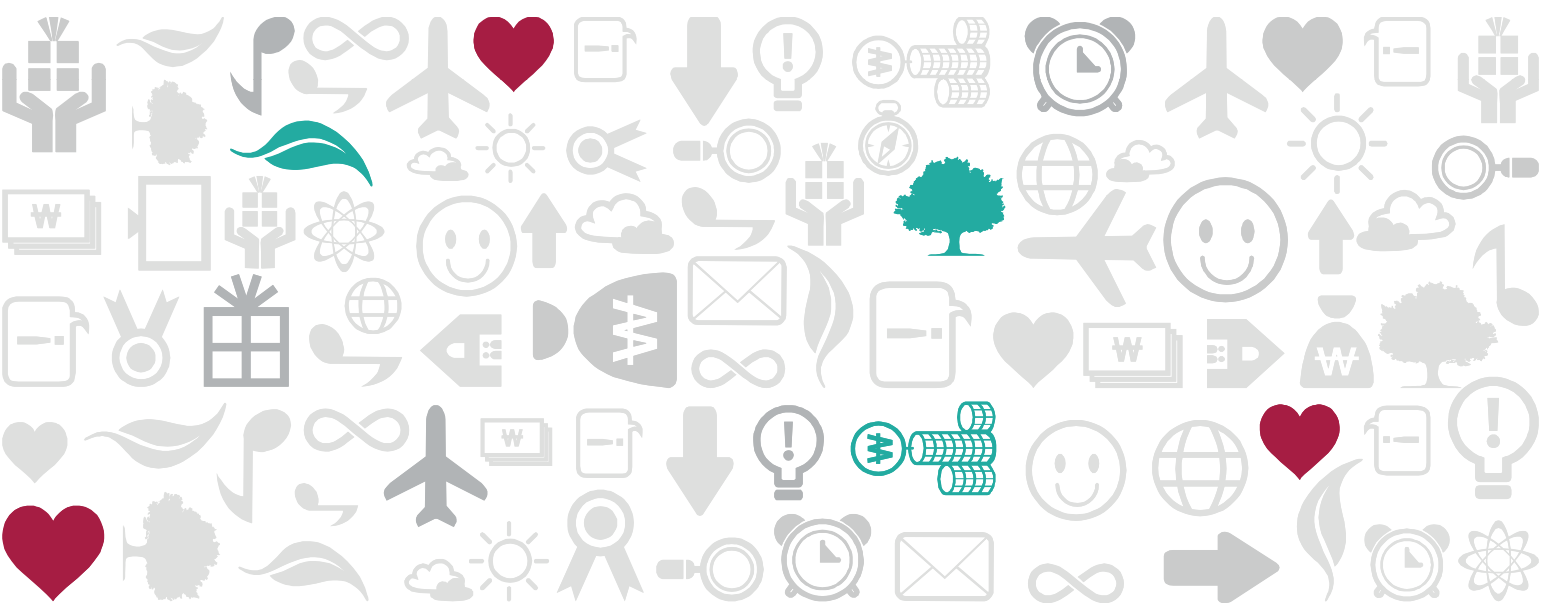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하나행복가이드 2013.10[No.07]
150-705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 Tel 2002-2200 | Fax 2002-2610